

2026

경찰, 해양경찰 수사와 증거 입문

엠북 경찰/경비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형사소송법, 판례 및 해설
- ★ 26년 형사법 개정 및 논의 동향 포함
- ★ 44분 완성

도서명 : 수사와 증거 입문

ISBN : 979-11-7393-217-5

발간일 : 2026-03-23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8,500원



수사와 증거 입문

[목차]

제1장 수사의 기초(p4)

제2장 수사의 개시(p19)

제3장 수사의 방법(p35)

제4장 수사의 종결(p70)

제5장 증거(p78~90)

[약어]

경찰은 사법경찰관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형사소송법 법조문 제목

제1장 수사의 기초

1. 수사

가. 의의

- 1)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 발견/확보, 증거 수집/보전
- 2)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해 개시

3) 일반원칙은

- 임의수사, 영장주의, 강제수사 법정주의, 수사비례, 수사비공개
- 단, 수사자유는 원칙아님

나. 수사의 조건

- 수사 개시, 진행, 유지 조건

1) 수사의 필요성

- 임의/강제 수사 불문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만 수사

a) 범죄혐의

- **수사는** 수사기관의 구체적 사실에 근거 둔
주관적 혐의에 의해 개시

- 혐의 없음이 명백하면 수사 못함

b) 공소제기 가능성(없으면 수사못함)

2) 수사의 상당성

- 수사의 필요성 있어도 수사의 수단은 수사
목적달성에 상당해야 함

a) 수사의 신의칙

- 국민의 신뢰 침해 금지

- 함정수사는

· 범의 가진 자가 범죄에 나갈 기회를 제공한

기회제공형은 적법

· 범의없는 자에 범의를 유발한 범의유발형은 위법(예: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부른 사건)

b) 수사비례의 원칙

- 수사처분은 목적달성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

- 강제수사의 요건

3) 영장주의

-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위해 법관의

영장필요

- 다수설은 피검자의 동의없는 거짓말탐지기

사용 불허

(판례)

-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 강제 연행시 형소법 절차에 따라야 함

(헌재) 다음은 영장주의 위반아님

- 교도소에서 마약검사를 위해 소변 채취
- 구 경범죄처벌법상 불이익 부과를 통한 지문채취 심리적 강요

2. 수사기관

가. 개념

- 법률상 수사권한이 인정된 국가기관
- (협의) 검사, 사법경찰관

나. 수사권의 조정

1) 개요

- 2020년 법개정으로 종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검사와 경찰의 협력관계로 변경
-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영장심의위 제도 마련
- 검사는 보완수사요구, 시정조치요구, 재수사요청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통제

2) 조정 전

a) 지휘관계

-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받음

- 검사가 지휘하면 경찰은 따라야 함
- b) 경찰은 모든 사건 검찰 송치(수사종결권 없음)
- c) 검찰은 모든 사건 수사
- d) 피고인이 조서내용 인정안해도 객관적 증명되면 증거능력 인정

3) 조정 후

- 경찰은 1차적/일반적, 검찰은 2차적/제한적 수사주체

a) 상호협력 관계

-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

· 경찰이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게 한 규정 삭제

-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법령위반, 인권침해, 수사권남용이 의심되면 검사는 시정 요구

b)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

- 범죄혐의 인정시 송치

c)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

① 중요 범죄

- 부패범죄, 경제범죄

- 국가의 사법질서 저해

-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

② 경찰공무원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
공무원이 범한 범죄

③ 상기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
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
있는 범죄

d) 검사 작성 조서는 경찰 작성 조서와
동일하게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
증거능력 인정

다.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(195조)

- 수사, 공소제기, 공소유지 협력

라. 검사의 수사 (196조)

- 범죄 혐의시 범인, 범죄사실, 증거 수사